

업 무 협 약 서

○ 협약당사자

(가) : 조은 방문요양센터

(나) :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

인천시(군구)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“가”와 “나”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 “가”와 “나”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정기 방문 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제공 등 의료-요양-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① “가”와 “나”는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한다.

② “가”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,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. 또한,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.

③ “나”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한다.

④ “가”와 “나”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협의한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상호가 합의하에 파기할때 까지 유효하다.

제5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 “가”와 “나”는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행위의 금지) “나”는 “가”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책임하는 행위
-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-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

제7조(준수사항) “나”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“가”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의료 이외의 요양 서비스의 진임을 금한다.

제8조(공유) “가”와 “나”는 정기적으로 사업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지) “가”는 “나”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
- 2. “나”가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“가”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

제11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“가”와 “나”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따른다.

제12조(협약서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협약서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가”와 “나”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4 월 28 일

(가) 조은 방문요양센터

(나)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



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